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참여 제안서

구성

| | |
|---------------------|----|
| 사경법시민행동 제안서 | 1 |
| 조직구성과 행동 계획 | 3 |
| 사경법시민행동 참여 신청서 | 4 |
| 사경법시민행동의 기본법에 대한 의견 | 5 |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기본법(안) | 10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제안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경제의 추구를 표방한 새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주체들에 의해 사회 혁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쌓인 문제와 병폐를 일거에 일소하기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일역을 담당할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청와대 내 공식 직제로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임명되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이 마련되고 각 부처 간 조정,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지난 10월 17일, 범 부처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에 사회적경제 현장의 주체들이 제안하고 요구한 정책, 방안들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은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정책개선과제 중심이라는 한계는 이후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의 수립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회원단체의 총의를 모아 세 정당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시급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경제 현장의 의견이 10월에 발표된 범 부처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으로 우선 매듭이 지어졌다면 이제 단기적인 차원의 정책에서 한 발 더 나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의 정책환경 정비에 사회적경제 진영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당사자 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적경제의 토양이자, 무대이기도 한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행동의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바른정당이 공약하고 추진하기로 협약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 정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동의하고 정책협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

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조속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바라는 현장의 바램과는 달리 국회 내에서는 각 정당 간 이해관계 속에서 조속한 제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사경법시민행동)은 2017년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현 시점에 전국의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유관조직, 시민사회가 조속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경법 시민행동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각자의 회원조직들로부터 출발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지지하고 동의하는 전국의 사회적경제조직, 시민사회단체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포용적 사회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모해가는데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 현장의 당사자 조직들의 동참과 공동의 행동을 요청드립니다.

2017. 11. 14.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 드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조직구성과 행동계획(안)

■ 시민행동의 조직 구성

- 조직성격 : 2017년 정기국회 기간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한 한시적 행동기구 (2017년 정기국회 내 입법을 우선 목표로 함)
- 참여조직 :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지하는 모든 사회적경제 현장의 당사자 조직과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조직
- 주요활동
 - ① 국회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힘쓰도록 촉구하고 약속하도록 하는 운동
 - ②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경법시민행동의 메시지 발신
- 대표단 구성 : 총 20인 내외로 구성
- 시민행동 기간 공동사무국 운영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 시민행동의 주요 행동계획

| 일정 | 주요 행동계획 | 비 고 |
|---------------------|--|---|
| 11.14 ~ | 참가 단체 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회의 기본법 의견을 기본으로 함. - 지자체 단위 조직 중 기본법에 대한 이해 및 논의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지역 간담회 진행 |
| 11.22 (수) 오전 11시 | 시민행동 발족식 및 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협약식을 염두에 두고, 지역 기반 집중 활동 선포 - 청년 대표는 사회적경제의 미래 상징 |
| 11.2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발송 - 지역별 행동 돌입_지역 의원 협약 작업 (각 정당/의원별 동의서 받기) | - 각 지역별 행동 추진 |
| 12.13 (수) 오후 1시 | 시민행동 집중의 날_전국대회 (국회 내 / 500명 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 제정 활동보고(협약/동의 의원 발표) -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안 제출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에 참여합니다.

| | | | | | | |
|---|-----|--|------|--------|------|--|
| 조직명 | | | | | | |
| 주소 | | | | | | |
| 대표전화 | | | | | | |
| 대표자 | 성명 |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 연명 단체명 | 1 | | | 21 | | |
| | 2 | | | 22 | | |
| | 3 | | | 23 | | |
| | 4 | | | 24 | | |
| | 5 | | | 25 | | |
| | 6 | | | 26 | | |
| | 7 | | | 27 | | |
| | 8 | | | 28 | | |
| | 9 | | | 29 | | |
| | 10 | | | 30 | | |
| | 11 | | | 31 | | |
| | 12 | | | 32 | | |
| | 13 | | | 33 | | |
| | 14 | | | 34 | | |
| | 15 | | | 35 | | |
| | 16 | | | 36 | | |
| | 17 | | | 37 | | |
| | 18 | | | 38 | | |
| | 19 | | | 39 | | |
| | 20 | | | 40 | | |
| <p>상기 조직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의 취지를 적극 지지하며 동참하고자 이와 같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 | | | | | |
| 조직명 | 대표자 | | | (인/서명) | |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 귀중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준)의 사회적경제기본법¹⁾ 제정에 대한 의견

■ 기본법의 목적

- (기본법의 목적)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그간 사회적경제조직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조성 and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면서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법의 의의

- (기본법의 의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가지는 의의는
 - 첫째,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사회적으로 인식, 공인하면서 앞으로 더욱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확대, 발전시켜가자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둘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주도 하에 사회적경제를 육성시켜온 과거의 방식,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민간의 자조와 협동, 연대를 기초로 하면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다.
 - 셋째, 소관부처와 사회적경제조직의 법적 형태 등에 따라 분절화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환경을 보다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환경으로 변화시켜 보다 효과적

1) 상세 내용은 별첨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 참조

인 정책환경으로 정비하고 실제적으로 이를 실행,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마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기본법의 성격

- (기본법의 성격)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위에서 설명한 목적과 의의를 가지며 우선 사회적경제의 공인과 활성화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개별 입법 및 세부 분야별 정책개발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기본법의 주요 내용

- (기본법의 주요 내용) 세부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담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열거와 등록제를 통한 보완) 법률에 의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 열거된 사회적경제조직 외에도 사회적목적 실현하고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조직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정책대상으로 폭넓게 포괄될 수 있도록 등록제를 통해 보완하도록 한다.
 - (국가 등의 책무 및 민-관협력의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한 책무를 충실히 실행, 이행하되 그 중에서도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 역시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특히 운영의 공개와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법률

에서 정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의 협력구조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계획과 지역별 기본계획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되는 기본계획 등과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의 실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여부를 점검,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민·관 공동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조화로운 정책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4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1/2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민-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 위원회는 주요한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대통령에 보고하도록 한다. 사회적경제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실행력의 확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는 사무처를 설치하며 기획재정부가 총괄부처의 역할을 맡도록 한다.
-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의 설립) 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을 받아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을 설립한다. 이 개발원의 운영 역시 민-관 협력의 기반 위에서 하여야 하며 민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간지원기관의 설치, 운영)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과 함께 정부와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부와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중간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경제연합조직과 협력하여야 하며 이 중간지원기관을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경제연합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연합조직)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발하고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을 위해 전국·지역 단위 또는 업종·부문 단위 협의회나 연합회 등 사회적경제조직간 연합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경제연합조직은 회원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공동사업,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들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사회적경제연합조직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 연합조직과 전국·지역 또는 업종·부문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적경제금융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와 금융체계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 및 출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의 개선,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징을 반영한 신용보증제도의 개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의 여신, 출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된 금융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국가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복권기금, 휴면예금 등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기금의 구성과 운영은 분리하되 기금구성 및 관리감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기금 운영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직접 사업으로 운용하기보다는 지역기금과 민간기금의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 역할로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기금)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지역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기금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민간 사회적금융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민간기금)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금융기관은 민간 차원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민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한 우선구매, 조세감면, 예산의 지원 또는 용자,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임대 또는 양여,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시민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닌 조직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의 규모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비 사회적경제조직을 인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 조세감면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연합, 공동사업의 추진, 공동연구개발, 공유자산의 축적과 클러스터의 조성, 공동 판로유통망의 구축 등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역, 업종, 부문, 전국단위 연대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들과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들간에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과제 2.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 사회적경제의 정의, 범위 규정 및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기여 인정
 -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의 구상과 실현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육성정책, 지원정책의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의 활성화
-

■ 제안배경

- 사회 통합 · 불평등 해소 · 공정한 시장 · 분배 정의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대
 -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 심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하고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
 - 201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는 상위 4위, 사회갈등지수는 2위로 높아지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어렵게 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사회통합 · 불평등 해소 · 사회경제 약자 보호의 대안으로써 사회적경제 부상
 - 국제적으로도 유럽과 북미 등 선진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에서 보이듯이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 경제 발전모델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20여 년 간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해 보이고 있음.
 - 현재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고용율 대비 사회적경제부문의 고용율은 4%대,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7%대이며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는 10%대에 육박하는 등 바야흐로 사회적경제는 사회혁신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견인차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함.
 - 우리나라 역시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발전해왔고 최근에는 정부의 고용정책과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일

2) 2017년 제19대 대선 시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발표한 정책제안서의 일부

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과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한국 노동연구원의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와 저임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황덕순 외 2015.12)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서 취약계층 및 저임금 집단의 임금이 높고, 내부 임금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분배에 있어 약자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를 국가의 주요 의제로 채택해 사회통합과 경제 민주화 실현
- 사회적경제 기업들 대다수가 소기업이며, 경제적 약자들의 협동기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동질성과 동기를 갖고 있음.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업들간의 상호 협력과 상호 거래를 활성화 해 대자본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 사회적기업 | 자활기업 | 마을기업 | 기본법coop | 생협 (의료생협 제외) | 농협 |
|-------------------|--------------------|---------------------|--------------------|------------------|-------------------|
| 1,713 (2017.2) | 1,760 (2016.12) | 1,337 (2015. 12) | 10,913 (2017.2) | 185 (2016.12) | 1,131 (2017.2) |
| 신협 | 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 연연초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 합계 |
| 911 (2015.12) | 1,372 (2014.12) | 142 (2017.2) | 15 (2017.2) | 928 (2017.2) | 20,407 |

※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자활센터,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연연초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살림, 아이쿱, 행복중심, 두레, 대학생협

■ 정책방향

- 그간의 사회적경제가 기여한 성과로부터 그 위상을 법률로 부여
- 위상에 따른 국가적 의제로 채택함을 법률로 선언
-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금융제도의 마련을 위한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
-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의 근거를 마련